

국민참여입법센터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2022. 4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농산업정책과)

1. 개정 이유

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8689호, '22. 1. 4. 공포, '22. 7. 5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, 범위,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마련(안 제17조의2 신설)

- 조사내용·범위 :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시장 현황 및 국내외 동향, 기업 및 투자 현황,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, 기술 수준 및 보급 현황 등
- 조사방법 : 조사계획 수립, 조사 대상자에 사전 고지, 조사방식, 전문 기관·단체에 조사 업무 의뢰 등

3. 주요 토의과제

○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 없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, 범위, 방법 등) ①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시장 현황 및 국내외 동향
2.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기업 및 투자 현황
3.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
4.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기술 수준 및 보급 현황
5.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목적·대상·방법·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
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, 서면조사,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,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융복합과 관련된 전문기관·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·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7조의2(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, 범위, 방법 등) ①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시장 현황 및 국내외 동향</u> <u>2.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기업 및 투자 현황</u> <u>3.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</u> <u>4.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기술 수준 및 보급 현황</u> <u>5.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</u> <u>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목적·대상·방법·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</u>

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, 서면조사,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,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융복합과 관련된 전문기관·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·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